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B 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12호

의 안 명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 결 일 2021. 8. 9.

주 문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8월 9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지]

국립·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 · 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2021. 8.



국민권익위원회

K N H R C

I. 추진개요	1
II. 관련현황	2
III. 문제점	4
(1)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회체 난립	5
(2) 연회비 등 예산 관리 부실	9
(3) 겸직허가 없이 임의협의회체 업무 수행	16
(4) 내·외부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	19
IV. 개선방안	23
(1) 회비 적립,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기준 마련	23
(2) 대학의 겸직허가 체계적 관리	26
(3) 임의협의회체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27
V. 조치사항	28
※ 참고1 : 전국 대학 임의협의회체 현황	29
※ 참고2 : 전국 전문대학 임의협의회체 현황	36

I.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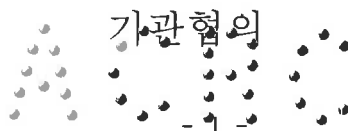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추진배경

-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 구성·운영**(고등교육법 제10조)
 - ※ 대학 간 법정협의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84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95년)
-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비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집행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
 - ※ 전국 또는 지역 협의체, 기관장 또는 실무자 협의체 등 유형별 약 137개(국·공립대 기준 연회비 약 45억원 규모) 운영 중('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회비를 대학 실무자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목적외 사용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 빈발
 -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무부처 일부 관계자가 **협의체에 참가, 모임을 주도**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
-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되, **임의협의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연회비 임의 적립·불법 집행 관행**을 개선하여 국·공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8. 5월 ~ '21. 2월 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
- '21. 3월 ~ 4월 대교협, 대학 등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 '21. 5월 ~ 6월 가관협의



II. 관련현황

□ 법정 협의체 현황

- 대학, 전문대학 등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 구성·운영**(고등교육법 제10조)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개가 있음(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현황 >

구 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설립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84.4월 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95.12월 제정)
목 적	대학 간 협조를 통한 대학교육 발전	전문대학 간 협조를 통한 전문대학교육 발전
회 원	대학의 장(사범대학, 교육대학 포함) ※ '20년 기준 200개교	전문대학의 장 ※ '20년 기준 134개교
구성원	147명 (회장 1, 이사 23, 감사 2, 정규직 58, 비정규직 등 63)	58명 (회장 1, 이사 29, 감사 2, 정규직 26)
기 능	■ 대학(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 대학(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대학(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 대학(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고 ■ 대학(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 대학(전문대학)의 교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수행 ■ 대학의 상호 협조에 관한 업무 등	
예산규모	99,961백만원('19년 기준)	15,130백만원('19년 기준)
연회비	기본금(300만원) + 학생수 × 2,100원	570만원 ~ 5,000만원(학생수 반영)

□ **대학 간 임의협의체 현황**(‘20년 기준, 대교협·전문대교협 조사자료)

○ 법정협의체 외 국·공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간 임의협의체는 13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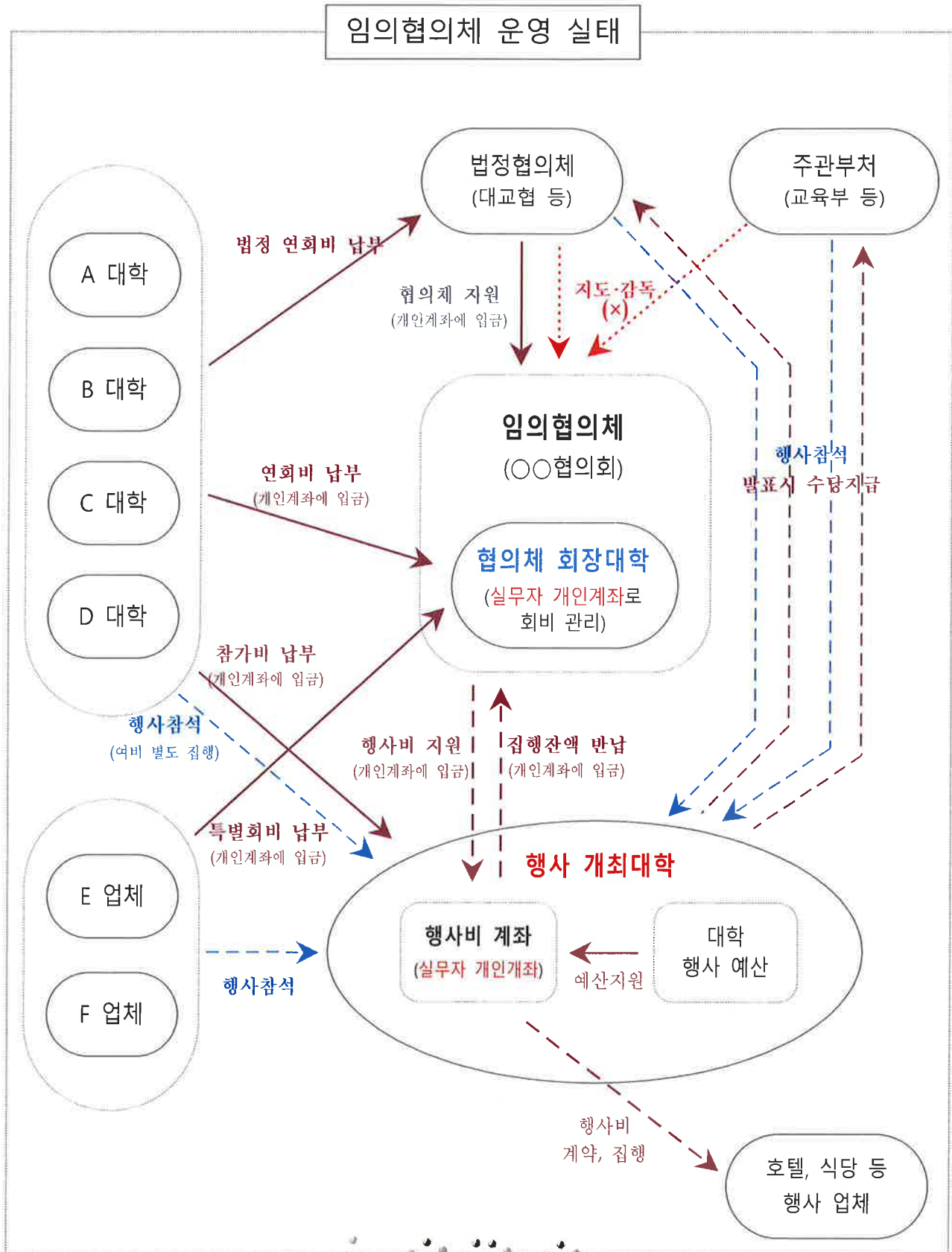
- 4년제 대학 협의체는 111개, 전문대학 협의체는 26개
- 총장 협의체는 30개, 학·처장 협의체는 34개, 실무 협의체 등은 73개
- 국·공립대 협의체는 15개, 사립대와 공동 협의체는 122개
- 법인 형태는 34개, 임의 단체는 103개

< 국·공립대 참여 임의 협의체 현황 >

구 분	세부내용	대학수(개)	비율
참여자 직급 기준	총장 협의체	30	21.9%
	부총장, 원장, 학·처장급 협의체	34	24.8%
	과장·팀장급 이하 실무 협의체	29	21.2%
	기타 협의체(직급 미구분)	44	32.1%
참여 학교 기준	국·공립대 협의체	15	10.9%
	사립대와 공동 협의체	122	89.1%
지역 기준	전국 단위 협의체	118	86.1%
	지역 단위 협의체	19	13.9%
형태 기준	사단법인	24	17.5%
	임의단체	113	82.5%
설립연도 기준	1989년 이전 설립	27	19.7%
	1990년 ~ 1999년 설립	27	19.7%
	2000년 ~ 2009년 설립	34	24.8%
	2010년 이후 설립	21	15.3%
	(확인불가)	28	20.5%
대학구분	4년제 대학 협의체	111	81.0%
	전문대학 협의체	26	29.0%

○ 연회비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협의체의 경우 10~800만원까지 다양

Ⅲ. 문 제 점



법적근거 없는 임의협의체 난립

○ 법정협의체와 설립목적이 유사함에도 임의협의체 지속 설립

- 법정협의체와 동일하게 '대학 간 업무협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80년대부터 관례적으로 임의협의체 설립

< 대학 간 법정협의체와 임의협의체 비교 >

구 분	법정협의체	임의협의체
종 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별, 참여자별, 대학특성, 기능·사업별 다양
설립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없음 (대학 간 자율적으로 설립)
설립목적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 도모	대학간 의견수렴, 업무협의, 상호협력, 친목도모 등
구성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체(총장)	대학별 임의 가입 (총장, 학·처장, 과·팀장, 실무자 등 다양)
설립절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설립	절차, 규정 없음 (일부 교육부 허가를 거친 비영리 사단법인)
법적권한	대학평가, 대학교원 연수, 대학교원 임용 보고업무(교육부 위탁) 등 수행	없음
지도·감독	교육부(사업계획 제출, 결산보고 등)	없음
운영예산	대학 회비, 국비보조금 등	대학 회비, 대교협 등 지원금

- 대학간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협의(총장협의회)나 분야별 실무자 교육(입학사정관협의회 등)을 위해 운영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정협의체 내 '분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 대안으로 운영 가능

※ 대교협 등은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별·기능별 분회 설립 가능(대교협 정관 21조의 2)

※ 대교협은 내 대학 간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별도 운영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법학전문
대학원대책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
(이상 '08년),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13년), 대학발전총장위원회('14년)

○ 대학형태, 참여자 등에 따라 유사한 임의협의체 중복 설립

- 대학 총장 협의체도 대학형태, 지역 구분에 따라 각각 설립·운영

< 국·공립대학 참여 협의체 중복 설립 사례(총장협의회) >

구 분	협의체명	회원수	연회비
전국단위 협의체	대교협 총회	200개교	2~5,000만원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41개교	200만원
대학형태별 협의체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10개교	200만원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19개교	100만원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12개교	100만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93개교	200만원
지역단위 협의체	서울총장포럼	32개교	100만원
	경인지역총장협의회	32개	100만원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9개	100만원
	충북지역총장협의회	17개	100만원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22개	100만원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10개	100만원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21개	100만원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22개	100만원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26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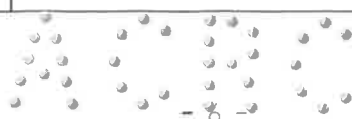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특정 업무 관련 협의체도 참여자 직급, 지역 구분에 따라 중복 설립

< 업무 관련 협의체 중복 설립 사례(정보화 분야 협의회) >

참석자	지역구분	협의체명	회원수	연회비
처장급 협의체	전국단위	국·공립대학정보기관협의회	41개	110만원
		(사)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233개	3~40만원
	지역단위	강원,충청,호남정보기관협의회	-	100만원
과장이하 실무협의체	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정보화과장협의회	41개	20만원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	214개	40만원
	지역단위	대전,충남,세종전산인협의회	-	20만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최근 단과대학간 협의회, 학회와 유사한 **학과간 협의회**까지 설립되는 등 임의협의체 구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

< 2005년 이후 설립된 학장·학과장 협의회 현황 >

구 분	협의체명	설립연도	회원수	연회비
학장 참여 협의체	전국조형예술계열학장협의회	2011년	48개	확인불가
	한국수의과대학협회	2014년	10개	50만원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2010년	35개	100만원
	전국국·공립대학교인문대학장협의회	2011년	27개	확인불가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2005년	27개	30만원
	(사)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16년	11개	확인불가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2008년	43개	58만원
	(사)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08년	25개	800만원
학과장 참여 협의체	(사)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2008년	79개	20만원
	소비자관련학과협의회	2005년	-	확인불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모임으로 설립되어 통제 불가

- 일부는 교육부 등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대부분 대학 간 **임의단체·모임으로 설립과정에서 아무런 통제가 없는 실정**

< 대학 협의체 설립 형태 >

구 분	협의체 예시	개수	비율
사단법인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사)한국경영대학·대학원 협의회 /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 (사)한국 대학박물관협회 / (사)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등	24개	17.5%
임의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거점국립대학교총장 협의회 /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 전국대학원장 협의회 /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 / 한국대학홍보협의회 등	113개	82.5%

- 일부 실무협의체는 운영과정에서 교육·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대학 또는 실무자 간 교류·협력 목적의 활동 등이 대부분

【 사 례 : 2019년도 전국대학 ○○관리자 협의회 춘계/추계세미나 】

- 일 시 : (춘계) 19.3.27.(수)~3.29.(금) / (추계) 19.11.13.(수)~11.15.(금)
- 장 소 : 000 제주호텔
- 일 정 : (1일차) 강연, (2일차 오전) 강연, (2일차 오후~3일차 오전) 개별 워크샵

⇒ 연간 2회 춘계/추계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개최하며, 2일차 오후 부터 3일차 오전까지는 지회별 개별 워크샵 일정으로 문화탐방활동 등 진행

- 일부 협의체 등에는 유관 기업이 특별회원으로 가입, 회비를 납부 하고 정기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민-관 유착 발생 우려

※ 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됨(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 례 : 한국대학○○협의회, 전국대학○○관리자협의회 】

- 전국대학○○관리자협의회는 특별회원인 민간기업에게 연회비를 3백만원 (정기총회 홍보부스 설치시 5백만원)씩 받았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인 '18. 4월 춘계심포지엄 개최시에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특별회원 39개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등 17개 업체에게는 제품 소개 기회 부여

※ 협의체별 민간회원 명단

한국대학 ○○협의회 (19개 업체)	(주)나라비전, (주)스마트카드연구소, (주)아이디노, (주)LGCNS, (주)이글루시큐리티, (주)인성정보, (주)전자상거래, (주)컴스퀘어, (주)KT, (주)트라이콤, (주)핸디소프트, (주)삼성SDS, 시스코시스템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사이베이스(주), 한국썬(주), 한국오라클(주), 한국후지쯔(주), 한국IBM(주)
전국대학 ○○관리자 협의회 (39개 업체)	

○ 법적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예산으로 연회비 적립

- 국·공립대학은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회원간 친목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비 등은 예산으로 집행 곤란**

* (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집행 지침 등

**('15. 12월, 감사원 감사) 교직원이 법령에 따른 운영 근거 없이 친목도모 등을 위해 임의단체에 회원 또는 회원학교로 가입한 경우 그 회비, 연수비 및 식사비 등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임의 단체의 회비 등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대교협 등 법정협의체의 회비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회비도 기관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편성·집행

※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대교협 등의 협회비 등을 편성·집행하도록 규정 ('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임의협의체 협의회 비용까지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

예산과목(세목)	설 정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u>협회비</u>,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재정보험 및 안전공제보험 등) ■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은 민간이전(320-03~05)목에 계상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예산편성 사례 : A대학 '20학년도 예산 편성내역(총무과 예산 부분 발체) 】

	산출내역	예산액
기관공통운영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지원사업)	- 부담금·협의회비	29,450
	· <u>대학교육협의회</u> 23,000,000원×1식	23,000
	· 교무처장협의회 2,800,000원×1식	2,800
	· 기획처장협의회 800,000원×1식	800
	· 학생처장협의회 2,000,000원×1식	2,000
	· 사무처장협의회 400,000원×1식	400
	· 정보전산협의회 450,000원×1식	450
(자체수입사업)	- 협의회비 및 세미나 참석비	9,500
	·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비 1,000,000원×1식	1,000
	·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비 1,000,000원×1식	1,000
	· 지역총장협의회비 2,000,000원×1식	2,000
	· 한국대학신문사포럼참가비 2,800,000원×1식	2,800
	· 행정처장협의회세미나비 1,000,000원×1식	1,000
	·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비 300,000원×1식	300
	· 예비군지휘관협의회비 400,000원×1식	400
	· 예비군지휘관세미나비 400,000원×1식	400

- 실제 협의회 참가를 위해서는 연회비 외에 교통비 등 **여비 집행이** 수반되며, 일부 협의체는 **참석자에게 별도의 참가비 납부를 요구**

【 참가비 납부 사례('18. 5 ~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국·공립대학○○기관협의회(40~100만원), ○○관리자협회(45만원), ○○관리자협의회(45만원), 한국대학○○협의회(50만원), 한국○○협의회(55만원)등 (A대학 '20학년도 예산서 등 발체)

- 특정 1개 대학 예산집행 확인결과 연회비, 참가비, 여비 등 **연간 약 1억 6천만원 집행**('17년 기준, 대교협 연회비 포함)

※ 40개 국·공립 대학이 약 6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연회비 약 45억원, 참가비 약 14억 5천만원, 여비 약 7억 5천만원)

< 특정 대학 협의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단위 : 천원) >

학 교 명	계	연회비	참가비	여비 등
B대학교('17년)	164,165	111,857	34,451	17,857
C대학교('20년)	99,167	80,521	12,920	5,726

* '20년 C대학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연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참여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정기모임 시 행사 개최대학을 별도 지정하여 협의체 회장대학에서 연회비를 지원하나, 일부 협의체의 경우 지원된 연회비만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추가로 대학예산을 **행사에산으로 편성·집행**

※ 이 경우 회비·행사비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여 특정 비용만 행사비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일정액을 연회비 계좌에 입금한 후 연회비와 통합하여 집행

【 정기모임시 행사비 추가 집행 사례('18. 5 ~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매분기 개최교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8년 개최교였던 **B대학은 행사비로 약 11백만원 추가 집행**
- B대학은 '17년 **12개 협의회 개최교**로써 **연간 행사비를 약 23백만원 집행**

- 일부 사적 모임인 지역 기관장 모임 회비까지 예산으로 집행

【 사적모임 회비 집행 사례('18. 5 ~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K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관장 모임인 '○○회', '○○회' 회비**(연 24~36만원)까지 예산으로 집행

○ 연회비, 행사비 등 공금의 부적절한 관리 관행화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 사용해야 함에도 각 대학의 예산으로 집행된 연회비 등의 수입금을 협의체 회장 대학의 실무자 개인 또는 부서 계좌에 비공개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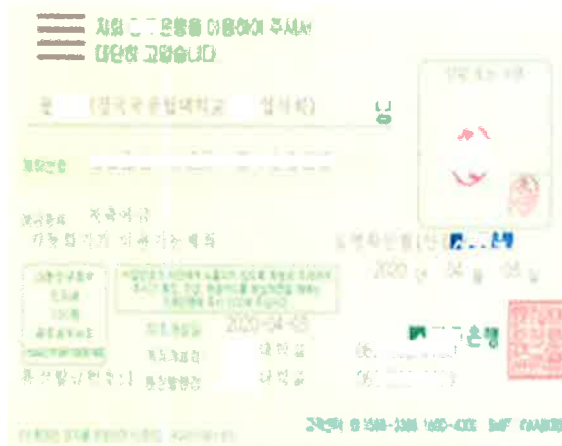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

-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잡종금 : 회계연도 개시 전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등(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연회비 등 임의 관리 사례①('18. 5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B대학은 국·공립대○○협의회 회장교를 역임하면서 각 대학의 연회비 등을 총무과 실무진 개인 통장에 관리하고 부서장 수기결재를 받아 집행
- B대학 ○○부서는 지역 대학 ○○관련 협의회 회장교로 각 대학의 연회비 등을 부서의 보조금 사업 통장에 통합 관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 제2항 위반)



< 실무자 개인계좌에 관리 >

< 보조사업 통장에 통합 관리>

- 일부 담당 부서장에게 수기로 결재를 받아 회비를 집행하는 등 통상적 예산집행 절차와 다른 변칙적인 운영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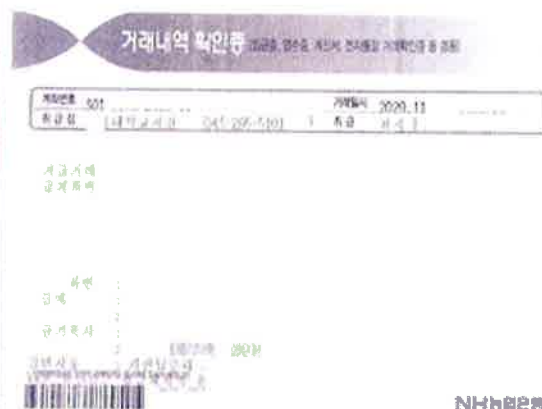
※ 각종 현금 집행 및 클린카드 미사용 등 통상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집행사례 발생

【 연회비 등 임의 관리 사례②('18. 5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C대학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협의회 회장교를 역임하면서, 정기총회시 각종 비용을 수기결재와 현금입금 방식으로 집행



< 부서장 수기 결재 >



< 현금 집행 >

- 대부분 특정 회원을 감사로 선임하여 자체 감사, 결산을 하기도 하나, 일부 제반 서류 등 인수·인계 없이 1년 단위로 회장교를 교체하는 사례도 발생

※ 회계 서류가 여러 대학에 보관되고 있어 회장대학 교체 시 인수인계가 미흡할 경우 유실 등 기록물 관리 문제 발생 우려

【 연회비 등 임의 관리 사례③('18. 5 ~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회비에 대한 결산보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교 중 지정된 감사에게 수기로 결재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회장교가 바뀔 때마다 종전부터 운영되어온 협의회 관련 일체의 서류를 모아 실무자들끼리 넘겨주고 있음(전국국공립○○협의회 실무담당자 의견)
- 현재 회장교로 선정되었으나 회계를 관리하는 총무 등은 아직까지 다른 대학에서 인수받지 않아 세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협의회 실무자 의견)

○ 연회비 등 각종 예산의 사적 사용 빈발

- 협의회 정기회의를 관광 호텔에서 1박 2일간 개최하여 행사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회원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일차에는 인근 문화탐방을 관례적으로 실시

※ 사전 공무국외여행 승인 없이 문화탐방 목적으로 해외(일본 대마도) 방문 사례 발생

【 문화탐방 등 행사비 과다집행 사례('18. 5 ~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전국 대학 ○○관리자 협의회'는 대학 ○○과장, 팀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로 정기모임을 '15년부터 매년 정기모임을 제주시 관내 호텔에서 개최
-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는 '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2일째 문화행사 일환으로 창덕궁 방문
- '한국대학○○협의회'는 '18년 동계 세미나를 부산코모도 호텔에서 개최하고 1박 2일간 일본 대마도 방문
- '국·공립대학교○○협의회'는 정기총회 후 '15. 3. 20(토) 문화행사 일환으로 부부동반 골프대회 개최(비용 개별 부담)

- 정기총회 등 행사 후 개최대학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하거나 이·취임 전별금,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의 예산 지출 관행화

【 회원간 선물 지급 사례('18. 5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C대학은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회장교로서 '20년 정기총회 후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하여 별도 관리대장이나 수령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였으며, 참가인원은 40명 내외인데 기념품은 300개를 구입하였음
- D대학은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17년 상반기 행사 종료후 참가자 전원에게 49,000원 상당의 전통 장 세트 선물
-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마다 개최교 예산으로 총장에게는 3만원 상당, 수행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 '전국 국·공립대학○○기관협의회'는 '15년 춘계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비로 1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매하여 50개 대학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

【 전별금, 경조사비 등 지급 사례('18. 5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전임회장 등에 감사패, 전별금, 화환 등을 지급하다가 '11. 9월 국민권익위의 '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14년부터 화환과 경조사비 변경, 지급

<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 경조화환 지급기준('14년 4차 정기총회시) >

구 분		종전	변경	비 고
퇴임총장	공로패	지급	미지급	
	이임식 축하화환	지급	지급	
	전별금(행운의 열쇠)	미지급	미지급	'12. 4월부터
신임총장	취임식 축하화환	지급	지급	
전임회장	감사패	지급	미지급	
	행운의 열쇠(2돈)	지급	미지급	

※ 동 기준과 상관없이 회원의 경조사 시 회비에서 화환 비용 지급

-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전임회장에게 공로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품 지급
- '국립대학교○○협회'는 회원교의 박물관 퇴직 교수, 직원에게 공로패와 20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 간사 수당 지급 등 회원 간 나눠먹기식 회비 집행 사례 빈발

【 회원간 나눠먹기식 회비 집행 사례('18. 5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전국 국·공립대학○○기관협의회'는 C대학 ○○과장에게 '○○기관 위상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맡기고 용역비 5백만원 지급
-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는 '17년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토론자로 참석한 회원들에게 발표수당(45~75만원) 지급
- '전국 국립대학교 ○○협의회'는 8개의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세미나 개최를 명목으로 매년 50만원씩 회비 지원
- '한국대학○○협의회'는 회비에서 각 대학의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 일부를 지원
-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전국 국립대학교○○협의회' 등은 간사수당으로 회장과 실무직원에게 연간 1인당 60만원 지급
- '국립대학교○○협회'는 퇴직한 직원을 초청, 그간의 근무경험, 소회에 대한 발표 대가로 발표비 30만원 지급

- 일부는 정기모임 후 회원들간 유흥비를 연회비에서 집행하거나 타 용도로도 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유흥비 등 집행 사례('18. 5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E대학은 지역 ○○부서원이 모두 참가하는 '○○협의회' '17. 6. 22(목) ~ 23(금)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총 1천만원(회비5백만원, 대학회계 예산 5백만원)으로 식비, 숙박비 외 술과 음료, 볼링, 당구비, 단체티 구매비 등 유흥비를 집행하였으며, 약 110만원의 회비 잔액으로 총회 종료후 E대 전산부서 직원 워크숍 비용(직원 차량지원비, 식대)으로 유용
-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20. 11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시행됨에도 1일차 정기회의 이후 간담회를 명목으로 호텔 내 술집에서 20여명이 모여 맥주와 음료 등 유흥비 56만원을 집행

겸직허가 없이 임의협의체 업무 수행

○ 겸직허가 규정을 대학별, 임의협의체별 다르게 적용

- 국가공무원은 비록 비영리 업무일지라도 타기관, 단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인사처예규 제104호) 】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①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②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 대학별로 임의협의체 임원과 유사한 ‘학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겸직허가 대상이나, 임의협의체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가 없이 겸직 수행**

【 C대학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 사례(‘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제5조(비영리업무 겸직허가 신청대상)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속시설의 장(학칙 별표4에 규정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에 한함)에 대한 비영리업무 겸직은 총장이 허가한다.

1. 비영리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임·직원

2. 학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필요한 단체 등의 직무(재건축조합 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 협의회 회원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단체자격, 또는 직위에 따른 자격이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이 임의협의체 임원을 경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별 가입여부가 상이하여 당연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판단

【 C, K대학 전임교원 겸직허가 사례('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19~'20년간 총 1,713건의 겸직허가 대부분 학회 임원, 정부·지자체 위원회 위원이며, 기간내 3건의 임의협의체 겸직허가 외 국·공립대학교○○협의회, 한국대학○○협의회 등 임의협의체 임원이 있었음에도 겸직허가 미신청

< C대학 임의협의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사례('19~'20년) >

소속	직급	성명	기관명	직위	겸직허가일
○○대학원	교수	이○○	○○대학원협의회	이사	'19. 3. 9.
○○학과	교수	양○○	○○교육협의회	회장	'20. 4. 9.
○○학과	부교수	이○○	국립대○○협의회	총무이사	'20. 6. 2.

- K대학 교원이 ○○협의회 회장을 역임('19년~)하고, 국립대학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나('20년~), 겸직허가 미신청

- 대학 직원도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일부는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대학별 일부만 겸직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

【 C대학 직원 겸직허가 사례('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19~'20년간 총 23건의 직원 겸직허가 대부분 산학협력단 등 대학내 법인 임원이며, 기간내 3건의 임의협의체 겸직허가 외 한국대학○○협의회 간사 등이 있었음에도 겸직허가 미신청

※ '21년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간사 2명은 별도 간사수당(분기별 20~30만원 내외)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미신청

< C대학 임의협의체 관련 직원 겸직허가 사례('19~'20년) >

소속	직급	성명	기관명	직위	겸직허가일
○○상담소	공무직	김○○	한국대학○○협의회	감사	'19. 3. 1.
○○상담소	공무직	김○○	한국대학○○협의회	이사	'19년
○○정보원	전산직	김○○	국립대학교○○협의회	연구원	'19. 7. 1.

○ 대학의 겸직허가 관련 전반적인 관리·감독 미흡

- 각 기관은 매년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의 동일 여부,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하나, 국공립대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인사처예규 제104호) 】

(1) 겸직실태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조사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에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함
- 결과통보 대상 : 기관별 소속 공무원 겸직 현황(최근 2년간),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현황(최근 2년간)

- 또한, 일부 대학은 겸직허가 업무량이 증가하여 내부규정으로 단과 대학 등 산하기관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학 내 겸직허가 내용과 실제 겸직실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실정

【 C, K대학 겸직실태조사 사례('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최근까지 겸직허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없으며, 교육부나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업무량 증가로 '20년부터 겸직허가 업무를 단과대에 위임하였으나 업무처리 실태 미점검 (C대학 겸직허가 업무 담당 의견)
- 교수들 대상으로 연간 2회 겸직허가 신청안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겸직허가 관련 실태파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만 관리하고 있음(K대학 겸직허가 업무 담당 의견)

○ 일부 협의체 정기모임에 대교협 등의 예산지원 관행화

- 대교협은 총장협의회 등 임의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면서 협의체 운영 비용 일부 지원

【 대교협 예산 지원 및 참여 사례('18. 5 ~ '21. 2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대교협은 '17년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예산 500만원 지원, 분기별 회의마다 사무국장 참석
- ○○협의회, ○○협의회 등 분야별 협의회 개최시 대교협 실무자가 참석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해 발표

○ 주무부처, 대교협 관계자 임의협의체(대학)로부터 강의수당 수령

- 일부 임의협의체에 참석, 정책·업무를 소개하고 수당을 수령하고 있어 지도·감독 기능 약화 우려

※ 임의협의체 예산 집행, 세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 미흡

< 교육부, 대교협 관계자의 강의료 수령 사례 >

협의체명	참여자	강의내용	강의료
전국국·공립대학교 ○○협의회('17.5월)	○○제도과장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30만원
국공립대학 ○○협의회('15.5월)	○○국장, 과장, 사무관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소개	각 30만원
전국대학○○협의회 ('18.1월)	대교협 ○○팀장	대교협 정책 소개,	30만원

○ 형식적 회비 결산 외 임의협의체에 대한 내·외부 감사 미실시

- 임의단체의 경우 회원 중 1~2명을 감사로 선임, 형식적인 결산 감사만 실시할 뿐,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감사결과를 승인받거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 미흡

監 査 報 告 書

[] 監 任 員 會 貴 中

본 감사원은 전국대학 협의회 학칙 제9조 5항에 따라 2017년 6월(2017.6.1) ~ 2018.03.28) 정기회비 및 순회 세미나 참가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구성된 외부감사 기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원 여러분께 보고 합니다.

1. 회계 감사 결과

전국대학 협의회 정기회비 및 참가비에 관한 회계 기록의 내용을 소정의 28개항에 따라 작성 하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업무 감사 결과

협회의회 기록작성과 임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대학의 학비납부회 비회원 대학의 참여등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예산과 예산의 차이가 나고 있지만 협의회 통한 회원요의 회비로 운영되기에, 2018년도 회비를 현재 회원료가 매월마다 납부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학의 공통 현안문제에 대하여 여러 관련기관과 공통 대응방식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대처하는 임원 및의 노력과 성과에 시기의 앞장드리며, 회관과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기 지속할 수 있도록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학 협의회학 무한한 발전과 전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전국대학 협의회 감사 []

감사 []

< 자체 감사 결과 보고 사례 >

총회 및 세미나 지원금 장산서

■ 수입금액 ₩12,000,000원

■ 지출금액 ₩12,000,000원

연월일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처	비고
2017-10-24	기성금	4,424,000	[]	계좌입금
2017-10-24	정회	52,800	[]	계좌입금
2017-10-25	공구비	18,900	[]	현금
2017-10-26	차량임대	317,500	[]	계좌입금
2017-10-26	항공권(성남권)	400,000	[]	현금
2017-10-27	소형책	200,000	[]	계좌입금
2017-10-27	항공권(인천)	259,200	[]	계좌입금
2017-10-27	항공권(성남권)	98,000	[]	계좌입금
2017-10-30	다과	584,480	[]	현금
2017-10-30	차량임대	382,500	[]	현금
2017-10-31	항공권	15,000	[]	계좌입금
2017-11-01	항공권	200,000	[]	현금
2017-11-01	다과	208,180	[]	계좌입금
2017-11-02	항공권	240,000	[]	현금
2017-11-02	항공권	208,000	[]	현금
2017-11-03	항공	4,261,480	[]	계좌입금
합계		12,000,000		

붙임: 지출증명서(영수증등본)

이와 같이 2017년 국·공립대학 협의회 지원금을 장산 합니다.

2017. 11. 23

소 속 [] 원

직 급 []

성 명 []

국·공립대학 협의회장 귀하

[]

[]

[]

< 자체 회비결산 사례 >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의단체와 유사하게 자체결산, 감사만 실시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외부감사 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①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 ②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 ③ 출연받은 재산가액(기부금)이 20억원 이상

- 대교협 등에서 지원한 보조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대교협, 교육부 등의 전반적인 감사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대교협 등 예산 집행 사례('18. 5 ~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대교협은 국·공립, 사립 총장협의회에 각각 4,000천원, 10,000천원, 지역별 총장협의회에 각 1,000천원, 기능별 총장협의회에 각 2,000천원 등 **연간 총 3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에 각 협의회로부터 **예산지원금 활용 계획을 제출**받고 있음

(단위:천원)

협의회명(회원수)	회장교	회장명	지원금		
			2018년도 (A)	2020년도 (B)	총합 (A+B)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41)	전남대학교	정병석	4,000	4,000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53)	동서대학교	정재국	10,000	10,000	-
소 계			14,000	14,000	-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9)	경동대학교	전성용	1,000	1,000	-
경안지역대학총장협의회 (32)	경기대학교	김인규	1,000	1,000	-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21)	광주대학교	김계중	1,000	1,000	-
대구·경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22)	대구대학교	김상호	1,000	1,000	-
대전·세종·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28)	한밭대학교	최병욱	1,000	1,000	-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총장협의회 (26)	창원대학교	이호영	1,000	1,000	-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10)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1,000	1,000	-
충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17)	유원대학교	채훈관	1,000	1,000	-
소 계			8,000	8,000	-
전국고원임성대학교총장협의회 (12)	부산교육대학교	오세복	2,000	2,0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 (12)	서강대학교	박종구	2,000	2,000	-
한국신학대학교총장협의회 (31)	서울장신대학교	인주훈	2,000	2,000	-
한국여자대학교총장협의회 (7)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2,000	2,000	-
소 계			8,000	8,000	-
합 계			30,000	30,000	-

- 신림면 총장협의회 : (국·공립) 4,000천원, (사립) 10,000천원
- 지역면 총장협의회 : 각 1,000천원
- 기능면 총장협의회 : 각 2,000천원

< '20년 예산 집행내역 >

- 전문대교협은 자체 내규에 따라 **10개 총장협의회를 대상**(지역별 총장협의회 9개, 국·공립 총장협의회 1개)으로 매 개최시 마다 협의회별 참여학교 **1개 학교당 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5개 주요 보직자 협의회에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내역 등은 미관리**

2020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지원금 활용계획서

□ 목적

- 전국 국·공립대학교 회원 대학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대학 발전을 도모
- 특히 2020년도 대학이 당면한 공통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건설적인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지원금액 : 4,000,000원

□ 지원금 활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 고
장기총회 경비	○ 회의책자 제작 500,000원 × 2회 = 1,000,000원	4,000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 예정
	○ 속기사 비용 750,000원 × 4회 = 3,000,000원		
합 계		4,000	

- 대교협의 경우 단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임의협의체 현황을 조사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 대교협의 임의협의체 현황 조사('18. 5 ~ '21.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매년 총장협의회, 부총장·학장·대학원장 협의회, 처(국)장 협의회, 팀(과)장 협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20년 기준 111개 협의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세부 현황 별첨자료 참고)

※ 조사결과 소규모 협의체 등은 제외하였으며, 미제출 협의체는 추가 조사 미실시

※ 전문대교협은 총장협의회, 처장급 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운영현황만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

< 대교협의 현황 조사 공문 >



대학의 권유력, 민생사회의 힘 - 대교협이 함께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 전국 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회원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대학 관련 협의회 간 상호 교류 및 원안 대응을 위한 공익내 형성을 위해 자료들을 발간·배포하고자 하오니, 현황 파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발간 자료: 2021 전국 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
- 나. 요청 내용: 각 단체별 기초 정보, 회상단 현황, 주요 행사, 주요 실적 및 위안 과제 등을 첨부된 자료집 양식(별첨 1)에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jilki101@kcu.or.kr) 송부
- 다. 요청 기한: 2021년 3월 31일(수)까지
- 라. 문의: 기획홍보팀 홍영기 선임전문원(☎02-6919-3826)
- ※ 본 자료집은 4월 말 발간·배포 예정
- ※ 발간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자료실" 탑재 및 협의회로 발송 예정
- ※ 원활한 수합을 위해 권년도와 당해연도 회상과 또는 간사료 간 즉시 협조 공유 요청
- ※ 제출 기한일자에 2021년 회상년 미확정인 경우, 전년도 또는 피상 내용으로 작성

- 붙임: 1. 2021 전국 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 자료집 양식 1부
2. 2020 전국 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 자료집(참고용) 1부, 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수신자 회원교

☎ 국민권익위 02-6919-3826 / 기획홍보팀 02-6919-3826 / 임현철 02-6919-3826 / 기획홍보팀 02-6919-3826

별첨: 1

시행 기획홍보팀-274 / 2021.03.10 / 권수

☎ 0940 서울 금천구 시부영길 60 대교협빌딩 3층 / https://www.kcu.or.kr
전화 02-6919-3826 / 팩스 02-6919-3820 / jilki101@kcu.or.kr / 공문

1 협의회명

가. 기초 정보

단 체 명	연 락 처	발 행 연 도	배 우 연 도	회 상 연 도	회 상 내 용
총 장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부 총 장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학 장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학 원 장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팀 (과) 장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협 의 회	02-6919-3826	2020	2020	2020	2020

나. 회상단 현황(협의회 상위에 따라 셀 추가, 삭제 가능)

단 체 명	성 별	소 속 기 관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총 장						
부 총 장						
학 장						
학 원 장						
팀 (과) 장						

다. 2021년 주요 행사(협의회 상위에 따라 셀 추가, 삭제 가능)

행사명	기간	주요 내용 (참고용)
1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개년 계획 - 0000.00.00 대교협 업무 계획 - 0000.00.00 대교협 업무 계획
2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개년 계획 - 0000.00.00 대교협 업무 계획 - 0000.00.00 대교협 업무 계획

라. 주요실적 및 위안 과제

대상 과제 명	대상 과제 내용(요약)

☐ 인사 사항 : ☐ 내역 : ☐ 문의 :
☐ 연인 : ☐ E-mail :

IV. 개선방안

1

회비 적립,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기준 마련

○ 임의협의체에 대한 연회비 등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으로 연회비, 참가비 등을 납부하고 적립하는 관행 중단

※ 필요할 경우 총장협의회, 처장협의회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되, 이 경우에도 예산총계주의, 관계법령(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유사 사례 : 2021학년도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의 경비는 지급 불가

- 사적인 용도의 찬조금, 격려금, 경조비, 전별금, 단체회비, 친목 성격 모임의 식비

■ 교직원이 임의 단체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지급 불가

- 각종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 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단체)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명칭 여하 불문

- 업무상 정기적인 협의,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만 실비로 집행

※ 학내 회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출장여비, 다과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

【 유사 사례 : 대전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

- 연회비 부담 없이 실제 회의개최에 따른 실비(여비 등)만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업무상 필요할 경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법정협의체의 산하협의회 등의 형태로 운영방식 개선 검토(법정협의체 회비로 운영)

< 운영방식 변경 예시 >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	법정협의체(대교협) 분과협의회
거점(지역중심, 교육) 총장협의회		법정협의체 분과협의회 소분과
지역별 총장협의회		법정협의체 분과협의회 소분과 또는 지역 간담회
부총장·학장·처장급 협의체		법정협의체 분과협의회 실무회의

※ 입학사정관협의체 등과 같이 교직원 직무 교육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 검토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또는 집행 기본지침에 반영(교육부)**

< 개선방안 예시 >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1년도 지침 14P) 】

라. 건전재정 운영

- (내용추가) 대학이나 교직원이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협의회)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참가비 등을 편성하지 않도록 관리
- ※ 필요할 경우 총장협의회, 처장협의회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되, 이 경우에도 예산총계주의, 관계법령(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대학 간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제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일반수용비, 여비 등)만 편성, 집행

○ **협의회 관련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 대학회계 '제세 및 공과금' 항목상 **협의회 비용은 법정협의체와 필요할 경우 총장협의체 등에 한해 편성·집행**하도록 명확히 규정

【 유사 사례 : 2021학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사. <u>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u> 1) <u>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u>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담금 5) <u>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u>(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3) 등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교육부)**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세목	설정	세목	설정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u>협회비</u>,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재정보험 및 안전공제보험 등) ※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은 민간 이전(320-03~05)목에 계상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 ----(생략) ■ ----(생략)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u>협회비(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등 법령에 의한 협의회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총장 협의회, 처장협의회의 회비)</u>,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이하 생략)

○ 임의협의체 임원, 간사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유도

- 국·공립대로 하여금 임의협의체 임원, 간사 등과 같이 임기 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도·점검

⇒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겸직허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대학에 권고(교육부)

< 개선방안 예시 >

【 국·공립대학 별 전임교원 겸직허가 규정 】

■ 겸직허가 대상

1. 비영리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임·직원
2. 학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필요한 단체 등의 직무(재건축조합 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각종 협의체 임·직원 등)

○ 대학 겸직허가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점검 실시

- 국·공립 대학이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겸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대학의 겸직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

⇒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겸직허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대학에 권고(교육부)

< 개선방안 예시 >

【 국·공립대학 별 전임교원 겸직허가 규정 】

■ 겸직실태조사 실시

- 각 대학은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인사처예규 제104호)에 따라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 겸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겸직허가 현황과 실태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 임의협의체 운영에 대한 국·공립 대학 지도·점검 실시

- 대학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립대학 대상 정기 감사 시 임의협의체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교직원이 불필요한 임의협의체의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복무교육 실시

※ 위법 또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집행 사례 발생 시 대학평가 등에 반영 검토

⇒ 국·공립 대학 종합감사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임의협의체 예산 지원 등 준수 여부 점검(교육부)

○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형태의 대학협의체에 유의사항 적극 안내

- 유관 기업 관계자와 업무상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외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
- 유관 기업으로부터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회비, 후원금 등의 모집을 중단하도록 안내

⇒ 교육부 소관 비영리 민간법인 형태 대학협의체 안내사항에 반영 (교육부)

○ 대교협 등의 산하 민간협의 기구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산하 총장협의회 등에 운영비용 지원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중장기 검토), 운영실적과 비용 집행 결과에 대한 정기 점검 또는 감사 실시

⇒ 산하 대학 협의기구 운영 관련 내부 규칙 제정(대교협, 전문대교협)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조치내용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1) 회비 적립,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기준 마련	○ 임의협의체에 대한 연회비 등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또는 집행 기본지침에 반영 ○ 협의회 관련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교육부
(2) 대학의 겸직허가 체계적 관리	○ 임의협의체 임원, 간사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유도 ○ 대학 겸직허가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점검 실시 ⇒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겸직허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대학에 권고	교육부
(3) 협의체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 임의협의체 운영 관련 국·공립 대학 지도·점검 실시 ⇒ 국·공립 대학 종합감사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임의협의체 예산 지원 등 준수 여부 점검 ○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형태의 대학협의체에 유의사항 적극 안내 ⇒ 교육부 소관 비영리 민간법인 형태 대학협의체 안내사항에 반영	교육부
	○ 필요시 대교협 등의 산하 민간협의 기구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강화 ※ 필요시 예산 지원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 산하 대학 협의기구 운영 관련 내부 규칙 제정	대교협, 전문대교협

☐ 조치기한 : 2022. 1월



참고 1 전국 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2020년, 대교협 자료)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총장	전국	국립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국·공립대학교간 상호협력	1992년	41개	전남대
총장	전국	사립	단체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립대학 간 상호협력	1982년	153개	동서대
총장	전국	교대	단체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사항 논의	1987년	12개	부산교대
총장	전국	신학대	단체	한국신학대학 총장협의회	신학대학간 상호협력	2007년	31개	서울 장신대
총장	전국	카톨릭	단체	한국카톨릭대학교 총장협의회	카톨릭계 대학들 간 상호협력	2009년	12개	서강대
총장	전국	종립대	단체	종립대학총장협의회	종립대학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2015년	8개	선문대
총장	전국	여대	단체	한국여자대학 총장협의회	여자대학간 상호협력, 여자대학 경쟁력 강화	2016년	7개	이화여대
총장	강원	전체	단체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	강원권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2004년	9개	경동대
총장	전남	전체	단체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대학 업무전반에 관한 협의 및 연구	2002년	21개	광주대
총장	경북	전체	단체	대구·경북지역대학 교육협의회	대학 경영 관련 협의와 연구조정	1989년	22개	대구대
총장	충남	전체	단체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대학 업무 전반에 관한 협의 및 연구	1990년	28개	한밭대
총장	경남	전체	단체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대학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1988년	26개	창원대
총장	서울	전체	단체	서울총장포럼	대학 간의견수렴, 유대강화등	2015년	32개	광운대
총장	전북	전체	단체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간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	1986년	10개	전주교대
총장	충북	전체	단체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상호협력을 통한 충북교육 발전	1996년	17개	유원대
총장	경인	전체	단체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	경인지역 대학교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2014년	32개	인하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총장	전국	거점 국립	단체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및 관심사항 협의	1997년	10개	경북대
총장	전국	지역 국립	단체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간 상호협력	2000년	19개	군산대
총장	전국	스포츠 대학	법인	(사)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 등	2010년	105개	고려대
총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육성발전 등	1996년	247개	광운대
부 총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부총장 협의회	대학 운영상 현안사항 논의	2001년	101개	대전대
학장	전국	경영대	법인	(사)한국경영대학·대학 원협의회	경영학 계열 교육 운영 정보 공유 등	2000년	53개	울산대
학장	전국	의과대	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협회	교류 협력을 통한 의학교육 발전	1984년	40개	고려대
학장	전국	치과대	법인	(사)한국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교류 협력을 통한 치의학 교육 발전	2016년	11개	서울대
원장	전국	교육 대학원	단체	전국교육대학원장 협의회	교육대학원 발전과 친목도모	1981년	114개	수원대
원장	전국	대학원	단체	전국대학원장협의회	대학원간 교류 및 상호협력	1973년	154개	중앙대
원장	전국	국공립 대학원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 대학원장협의회	당면과제 연구 및 정보교환	1995년	31개	충북대
학장	전국	농학대	법인	(사)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	교육, 행정 및 연구교류, 관련분야 홍보 등	2008년	43개	서울대
학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양교육 협의회	대학간 자율적 협의와 정책제안, 정보공유 등	2001년	127개	건양대
학장	전국	예술대	단체	전국조형예술계열학장 협의회	대학 상호협력, 교육운영 개선 등	2011년	48개	홍익대
학장	전국	법과대	단체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법학연구 및 학술활동 등	2008년	75개	국민대
학장	전국	국립 사범대	단체	전국국립대학교사범 대학학장협의회	사범대 운영개선, 교과교육 연 구 등	2001년	16개	부산대
학장	전국	사립 사범대	단체	전국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	사범대 운영개선, 연구·정보교환 등	1974년	33개	이화여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학장	전국	공과대	단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 개선, 공학의 중요성 홍보 등	1991년	132개	서울 시립대
학장	전국	수의대	단체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수의학 교육 개선, 동물복지 등	2014년	10개	서울대
학장	전국	약대	법인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학대 자격시험 시행 및 약학교육 내실화 등	2010년	35개	계명대
학장	전국	한의대	단체	한국한의학대학·한의학 전문대학원협회	한의학교육의 향상 도모 및 상호 유대 강화	1990년	12개	경희대
학장	전국	국립 자연대	단체	전국국립대학교자연 과학대학장협의회	교육, 연구 및 학술교류	2001년	19개	전남대
학장	전국	국립 인문대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인문학 및 인문대 발전방안과 현안 협의	2011년	27개	전남대
학장	전국	국립 사과대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교육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2005년	27개	서울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	대학교육의 질적제고, 교육제도 기획·개발	1989년	205개	전북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교육교류 협의회	국제교육에 관한 업무협조, 정보교류 등	1999년	70개	이화여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기획처장 협의회	대학교육의 발전적 기획, 재정문제 개선 연구	1989년	256개	호서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사무,총무, 관리,재무처장협의회	행정제반의 자료와 정보교환, 교육부 소통	1987년	209개	인하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협의회	상호간 협력 및 외부 기관과의 교류 등	1997년	201개	중앙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입학관련 처장협의회	상호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등	-	201개	카톨릭 관동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학생처장 협의회	상호 친목도모, 업무자료, 정보교환 등	1975년	192개	극동대
처장	전국	국립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학사업무 연구 및 의견교환, 친목도모	-	31개	목포 해양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진로취업처장협의회	진로 및 취업지원 방향 논의, 친목도모	2017년	102개	건국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교무행정 관리자협의회	교무행정에 관한 자료 및 정보 교환	1986년	195개	한양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학사행정 관리자협의회	학사행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교환	1998년	167개	한양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 협의회	대학발전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 및 정보교환	1995년	142개	부산외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평가협의회	교직원 자질 향상과 정보교환, 업무협조 등	2006년	176개	삼육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원 행정관리자 협의회	대학원 사무행정 발전방안 연구, 정보공유	1995년	185개	대구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 관리자협의회	상호 업무협조, 관련 정보교환,구성원 교육	1994년	150개	충남대
과장이 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입학관리자 협의회	입시제도 개선, 정보교환, 친목도모	2002년	201개	단국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	정보기술 정보 교환, 보급, 확산, 친목도모	2000년	214개	호서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관재·구매 관리자협의회	실무자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	2009년	188개	경기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협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협력	2003년	149개	국민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생활관관리자협의회	정보 교류 및 생활관 운영방안 모색	1990년	250개	홍익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진로 및 취업 관련 사례연구 및 정보공유	1996년	259개	가천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학생관리자협의회	업무와 정보교환, 연구, 협의	1990년	184개	세종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협력	1977년	225개	경상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대학간 정보교환, 교육, 연구, 협의, 자문 등	2003년	127개	고려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 인사 및 교육관리자협의회	인사업무 정보교환, 연구, 협의	2003년	70개	동의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대학발전기금협의회	발전기금 모금 관련 정보공유	2000년	210개	한국외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상호 정보 교류	1997년	150개	울산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과장 이하	전국	국립	단체	국·공립대학전국취업 담당관협의회	취업 프로그램 개발, 정보공유, 친목도모	2009년	55개	강원대
과장 이하	전국	국립	단체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도서관간 상호협력 및 직원 역량강화	1962년	54개	경상대
과장 이하	전국	사립	단체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상호간 유대강화, 협력, 직원자질 향상	1972년	124개	영남대
과장 이하	전국	사립	단체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	교육전담, 세제개선 등 현안논의	1979년	153개	가천대
과장 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총무·인사 행정협의회	행정 개선방안 연구, 업무 정보교류 등	1987년	171개	아주대
기타	전국	사립	법인	(사)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보교환, 관심사항 협의·연구	1986년	176개	가천대
기타	전국	전현 총장	법인	(사)한국대학총장협회	전 현직 총장 상호 협력	1995년	428명	경원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협의회	사업단간 교류, 협력, 사업홍보 등	2012년	55개	전주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창업선도대학협의회	창업선도 대학 활성화, 창업생태계 선순환 모색	2012년	43개	송실대
기타	전국	학교 기업	법인	(사)한국학교기업협회	학교기업들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관계 도모	2007년	55개	을지대
기타	전국	신학 대학	단체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신학교육의 정체성 및 방향성 제시	1965년	38개	서울 장신대
기타	전국	여교수	법인	(사)전국여교수연합회	연구활동가 권익신장, 교수사회 양성평등 구현	1998년	100개50 0명	동서울대
기타	전국	법학 교수	법인	(사)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개선	1964년	1,600명	경희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보건학교육 협의회	보건학 교육 발전에 기여	1991년	30개155 명	인제대
기타	전국	사립대 교수회	법인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투명한 대학 운영, 교권확립 및 지위향상	2005년	110개	한국기술 교육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대학기록의 관리, 보존 정상화, 발전추진	2005년	41개	경희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	도서관 간 상호협력 및 정책 공조	2007년	301개	강원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기타	전국	전체	단체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상호협조와 정보공유	2001년	222개	카톨릭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이러닝협의회	이러닝 발전에 관한 연구와 협의	2005년	283개	전북대
기타	전국	국립	단체	전국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	공동실험 실습관 발전방향 논의, 정보공유	1996년	26개	전목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입학사정관 협의회	정보교류,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	2010년	80개900 명	광주교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교장학·학자금 융자협의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의, 정보교환	2005년	300개	우석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언론협의회	대학신문, 방송지도, 연구, 발전, 친목도모	1984년	75개	가천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	사회봉사 활성화 및 담당자 정보교류	2010년	212개	명지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	상호협력 및 평생교육 활성화	1989년	185개	제주 한라대
기타	전국	국립	법인	(사)한국국립대학평생 교육원협의회	평생교육 연구, 조사, 협의, 정보교환, 자료보급	2002년	42개	군산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그린캠퍼스 협의회	캠퍼스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협력	2009년	51개	연세대
기타	전국	사이버 대학	법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이버대학 제도 관련 정부 건의 등	2004년	21개	사이버 한국외대
기타	전국	연구소	법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	통일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학문교류 등	1983년	78개	충남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윤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2015년	50개	고려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협의회	회원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2008년	78개	고려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국·공립대학교교 협의회	회원간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	2015년	49개	전북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국제교육자협회	최신정보 공유, 교류, 전문성 제고, 교육 등	1998년	100개	건국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상담전공대학원 협의회	상담전공 대학원의 발전 협의, 교류 등	1997년	49개	국제신학 대학원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설립목적	설립	회원교	회장교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대학박물관간 협조 및 제도적 보호, 교류 등	1961년	100개	한양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대학출판협회	출판 업무 부서간 유대 강화	1981년	49개	한국외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열린대학교육협의회	열린교육 체계 구축, 사이버교육 교류, 협력	1997년	80개	공주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한국대학정보화 협의회	대학 정보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등	1997년	233개	이화여대
기타	전국	국립	단체	전국국립대학교수회 연합회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 연구, 환경개선	1999년	41개	제주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대학IR협의회	각종 교육 서비스 효과분석, 공유, 확산	2018년	75개	충북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전국대학 학군단 행정실장 협의회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에 관한 연구발전 등	2009년	22개	전남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K-MOOK참여대학협의회	참여대학 상호간 교류, 협력, 연구, 홍보 등	2017년	63개	전남대
기타	전국	전체	법인	(사)소프트웨어중심대학 협의회	과기부 지원대학 간 상호 협력 및 발전 도모	2017년	40개	서강대
기타	지방	사립	단체	지역사립대학발전 협의회	지역사립대 발전 방안 강구 및 상호 협력	2014년	14개	중원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재편집

참고 1 전국 전문대학 관련 협의회 현황(2020년, 전문대교협 자료)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회장교
총장	서울	전체	단체	서울지역 전문대 총장협의회	인덕대
총장	경남	전체	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전문대총장회	동의과학대
총장	경북	전체	단체	대구, 경북지역 전문대 총장회	경북전문대
총장	경기북부	전체	단체	인천,경기북부지역 전문대총장회	서울예술대
총장	경기남부	전체	단체	경기남지역 전문대총장회	장안대
총장	전남	전체	단체	광주, 전남지역 전문대총장회	고구려대
총장	충청	전체	단체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총장회	백석문화대
총장	강원	전체	단체	강원지역 전문대총장회	강원관광대
총장	전북	전체	단체	전북지역 전문대총장회	원강보건대
총장	전국	국립	단체	국공립 전문대총장회	충북도립대학교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 협의회	광주보건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경남정보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교 사무처장 협의회	아주자동차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	전북과학대
처장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	영남이공대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기획관리자협의회	군장대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전문대학홍보협의회	원광보건대

구분	지역	범위	형태	명칭	회장교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동서울대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인하공업전문대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동원대
과장이하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동양미래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	마산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	대전보건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동남보건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서정대
기타	전국	전체	단체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서울예술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재편집

정 본 입 니 다 .

2021. 8. 1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 O R C